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499
----------	-------

발의연월일 : 2019. 9. 17.

발 의 자 : 정성호 · 기동민 · 한정애
송기헌 · 백혜련 · 강병원
김정호 · 김정우 · 맹성규
김경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 제도가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등으로 청문회 무용론이 팽배한 상황임.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유능한 인재의 공직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문회가 정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고위공직자에 대한 깊이 있는 자질 검증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재 발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사전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근거 없는 흠집내기 청문회는 지양하되 국회가 심도 있는 검증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공직후보자 사전 검증 자료의 국회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청문위원 의견 적

시, 공직후보자 선서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업무 능력과 자질 검증이라는 인사청문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4조의2,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20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예비심사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증빙서류의 내용을 점검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 예비심사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비심사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예비심사소위원회에서 점검을 마쳤을 때에는 예비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비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는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동의 또는 인사청문이 요청된 공직후보자에 한정한다.

6.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검증한 사항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 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위원의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포함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회(예비심사소위원회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위원의 징계) 국회는 위원회 위원이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에 제출된 임

명동의안등과 그에 따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전단 중 “제10조제1항·제2항”을 “제1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1. ~ 5. (생략)

<신설>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③ ~ ⑦ (생략)

제10조(경과보고서) ① (생략)

<신설>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 동의 또는 인사청문이 요청된 공직후보자에 한정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검증한 사항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 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경과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공직후보자등에 대한위원의 적격 또는 부적격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

